

#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

## ● 사업목적

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,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

## ● 사업내용

- (지원대상) 청년(만15세 이상 34세 이하)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(성장유망업종,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)

\* 단, 사행·유형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

- (지원요건)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<sup>①</sup>, 신규채용 청년 6개월 이상 고용유지<sup>②</sup>, 기업전체 근로자수 증가<sup>③</sup>

① (청년 정규직 신규채용) 기업 규모\*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\*\*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

\* (30인 미만) 1명 이상, (30~99인) 2명 이상, (100인 이상) 3명 이상 채용

\*\* 사업주(법인은 대표이사)의 배우자, 4촌 이내의 친·인척 등은 지원 제외

### <기업 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>

기업 규모*	청년 신규채용
30인 미만	1명 이상
30인 ~ 99인	2명 이상
100인 이상	3명 이상

\* 기업규모는 전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('20년 신규 성립사업장은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)

② (6개월 이상 고용유지) 신규채용 청년은 6개월\*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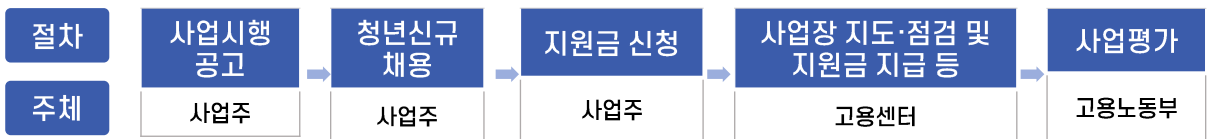
\*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은 채용일이 속한 달을 포함하여 역월단위로 산정

③ (근로자수 증가) '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'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,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('20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)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해야 함

## ● 지원수준 및 지원 한도, 신청기한

- (지원수준)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하되, 기업 규모별 지원인원을 차등화\*
  - \* 기업규모가 30~99인 경우는 2번째 채용 인원부터, 100인 이상인 경우는 3번째 채용 인원부터 지원
- (지원한도) 기업당 최대 30명까지
- (신청기한)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(6개월) 종료 후 3개월 이내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함(이후 3개월 단위로 신청)
  - \* 다만, '20.1월부터 6월까지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은 '21.3월까지 신청가능

## ● 사업 추진체계



## ● 참여(신청) 방법

-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홈페이지([www.ei.go.kr](http://www.ei.go.kr))를 통해서 신청
  - \* 관련서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[www.moel.go.kr](http://www.moel.go.kr))에서 확인 가능

## ● 사업 규모

'21년 신규 9만명 지원

- 신규 9만명 지원은 최소고용유지기간(6개월)을 충족한 '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채용자에 대해 우선 지원
  - \* 신규지원 인원 9만명이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

## ● 지원문의

---
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: 1350
- 부산청 : 051-860-1923~7
- 부산동부 : 051-760-7210~5
- 부산북부 : 051-330-9951~5
- 고용보험 홈페이지 : [www.ei.go.kr](http://www.ei.go.kr)